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609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7일

발의의원 :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 제6조
- 현행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별첨2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5조 제4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별첨1】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0.6.4.] [법률 제16734호, 2019.1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략)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생략)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7.1.] [대통령령 제31839호, 2021.6.29., 일부개정]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 3. (생략)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생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1.10.6.]

(일부개정) 2021.10.06 조례 제719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1.10.6.]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별첨2]

현 행 조 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1호
일부개정 2020년 4월 3일 조례 제178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오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

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4. 3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